행 정 정 보 공 개 제 도 편 람

차 례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 3

1. 정보공개제도 설명 ····· 4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4
   2 공개제도의 연혁 ····· 5
   3 정보공개법의 구성체계 ····· 6

2.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 7

3. 불복구제 절차 ····· 8
   1 이의신청 ····· 8
   2 행정심판 청구 ····· 9
   3 행정소송 ····· 9

4. 인터넷 정보공개 처리방법 ····· 10
   1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 ····· 10
   2 인터넷 청구제도 이용방법 ····· 10
   3 인터넷 접수 및 처리절차 ····· 11
   4 청구서 처리시 유의사항 ····· 12

5. 비공개 대상정보 ····· 13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14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 ····· 15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 ····· 15
   4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 ····· 16
   5 일반행정 운영정보 ····· 17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20
   7 법인관련 정보 ····· 22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 23

Ⅱ.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과 해설 ····· 24
1. 개정 배경 ····· 25
2.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 25
3.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 28
4.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 30
5. 개정내용 해설 ····· 31
[1] 총 칙 ····· 31
[2] 공공기관의 의무 ····· 35
[3] 비공개대상정보 ····· 39
[4] 정보공개의 절차 ····· 43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 48
[6] 비용의 감면 ····· 51
[7] 이의신청 ····· 52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55
[9] 정보공개위원회 ····· 56
[10] 기 타 ····· 60

Ⅲ. 행정정보 공표 ····· 63

Ⅳ. 행정소송·심판 사례 ····· 68
1. 행정소송 판례 ····· 69
2. 행정심판 재결례 ····· 87

《부록》 관계법령 ····· 132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33
[2]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 169
[3]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 173
[4]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177
[5] 인천광역시비공개세부기준 ····· 184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 설명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 개 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2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12.31 공포, 1998.1.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1998.1.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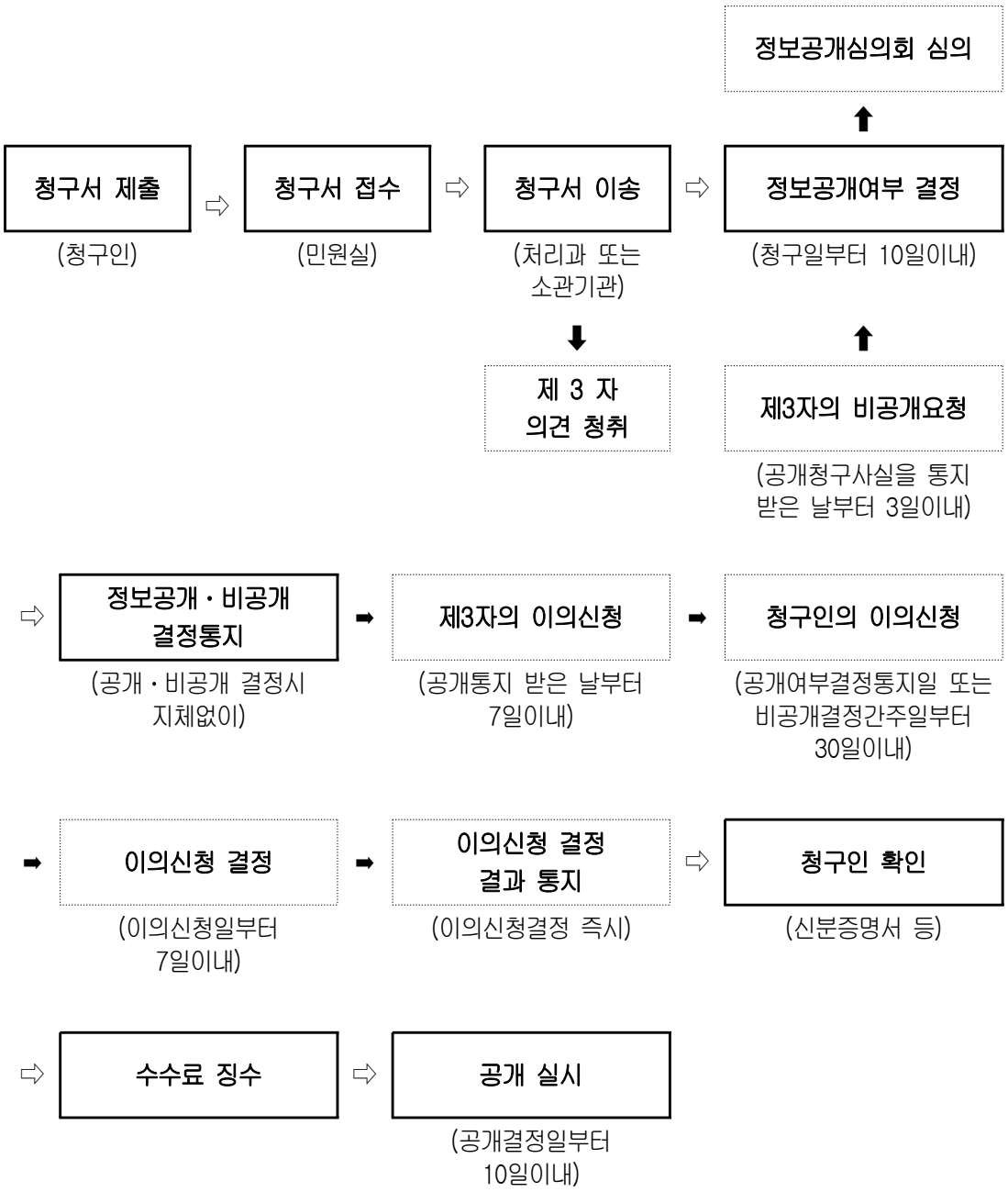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2003. 12. 23)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3 정보공개법의 구성체계

개 정 전(5장, 24조, 부칙)		개 정 후(5장, 27조, 부칙)	
구 성	내 용	구 성	내 용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 제6조(정보공개청구권자) ·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제12조(부분공개) ·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4조(청구인의 의무) · 제15조(비용부담)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제14조(부분공개)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비용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	· 제16조(이의신청) · 제17조(행정심판) · 제18조(행정소송) ·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제4장 불복구제절차	·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행정심판) · 제20조(행정소송) · 제2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5장 보 칙	· 제20조(제도총괄) · 제21조(정보제공) ·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4조(위임규정)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등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 제27조(위임규정)

2.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3.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신청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3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인터넷 정보공개 처리방법
(http : //info.egov.go.kr/io)

1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제도

○ 이 제도는 2000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임

○ 국민들은 직접 인터넷상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음은 물론「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 볼 수 있음

2 인터넷 청구제도 이용방법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http : //info.egov.go.kr/io)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및 등록(청구) - 해당기관에 접수

○ 해당기관에서 청구서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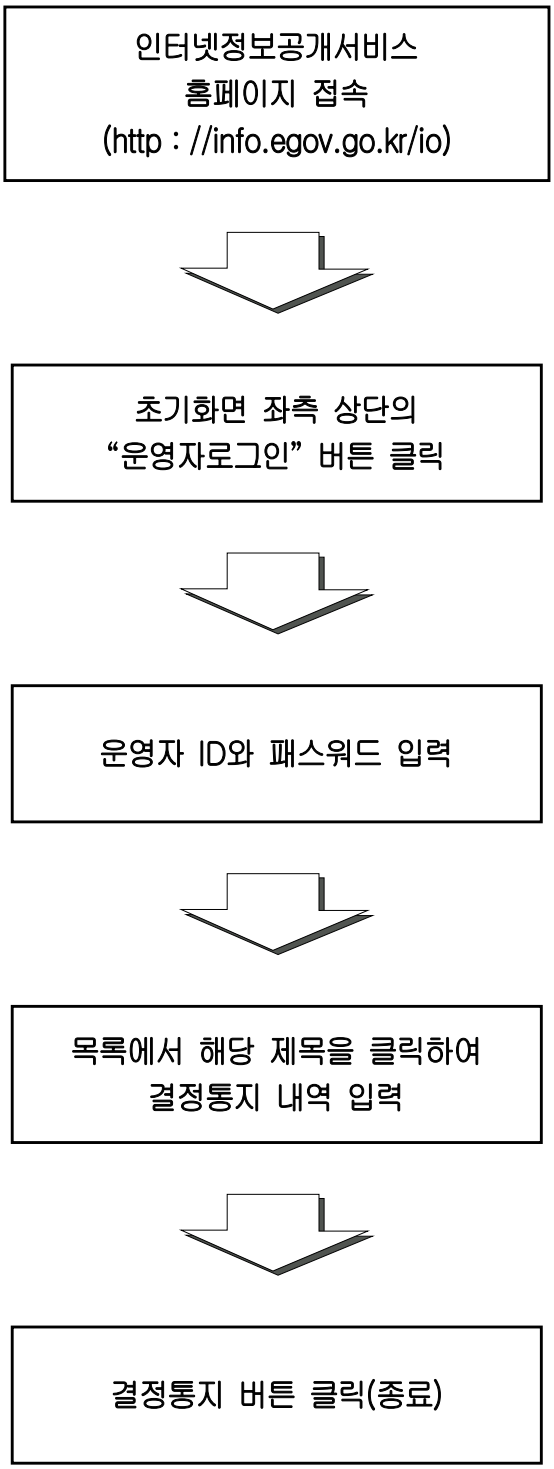
○ 결과 통지(해당기관 → 청구인)

- 통지 방법 : 결정통지버튼 클릭시 입력 내용이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e-mail이 발송됨
- 통지 내용
  -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공개 실시

※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거나 우편 공개시 온라인 입금 처리

3 인터넷 접수 및 처리절차



<입력 내용>

- 공개여부,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 기타 수수료 없이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를 입력

- 결정통지버튼 클릭시 입력 내용이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e-mail이 발송됨

4 청구서 처리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정보공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당일 결정통지를 해야 함

○ 수수료 감면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와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참고

○ 처리부서가 잘못 지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문서과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민원실에서 처리부서를 다시 지정토록 해야 함

○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부서별 관리자ID와 패스워드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가급적 월1회는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함

○ 또한 담당자(과서무) 변동시 반드시 담당자정보(직급,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를 변경해야 하며, 패스워드 및 담당자정보 변경은 관리자 화면에서 “부서정보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됨

5.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유형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 제81조의 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2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관계정보, 출입국 관련정보 등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내용〉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수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서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 성별, 학력, 직업, 재산상황 등)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 참고사항〉

o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o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함.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함

o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o 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o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7 법인관련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경영·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Ⅱ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과 해설

정보공개법 주요 개정내용과 해설

1. 개정 배경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

○ 지식정보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On-line에서도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지난 6년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

2.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제2조, 제15조)

○ “문서”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근거마련

○ 열람, 사본·복제물 교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개”의 범위에 포함시켜 전자우편(e-mail)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공개에 응하여야 하며,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함

(2)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 도입(제7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미리 공개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

록 의무화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제8조)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4)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제9조)

○ 헌법기관규칙, 대통령령, 조례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부령이나 자치규칙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지 못하게 하였음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과 같은 추상적 기준을 삭제

○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을 비공개로 정하였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정함

(5) 정보공개절차의 개선

○ 정보공개청구(제10조)

- 공개청구시 사용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공개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요청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청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하여 구술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공개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제13조)

(6)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제1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위원(위원장 제외)의 1/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재판·수사·검찰·행형 등과 관련한 국가기관은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도록 함

(7) 불복구제절차(제4장)

○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서 “공공기관의 결정(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로 불복구제요건을 완화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는 판례의 추이를 반영하였음

○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함

(8) 정보공개위원회(제5장)

○ 범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수립,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강화

3.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1) 공공기관의 범위 재설정(제2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외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 국가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기・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 급 학 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 수 법 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2) 정보목록의 내용(제5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목록을 기록물등록대장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관리와 정보목록의 관리를 일원화

(3) 정보공개절차의 개선(제12조)

○ 정보공개결정이후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도록 하여 신속한 정보공개를 기함

○ 청구된 정보량이 과다한 경우 청구인의 열람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내에 교부 완료

(4) 전자적 방식의 활성화(제14조)

파일형태의 정보는 전자우편이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적 공개방식을 활성화하여 청구인의 편의 도모

(5) 비용부담(제17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비영리단체가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6) 정보공개위원회(제5장)

○ 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공무원인 위원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의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

4.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수수료 별표 개정

○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사진 등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금액을 합리화

○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전자파일 복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산정근거를 마련

(2) 서식 개선

○ 전자적 정보공개의 제도화에 따라 서식을 보완·개선하고,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이의신청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등 법률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 각종 통지서식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불필요한 기재란 삭제 및 안내사항 충실화 등 청구인 편의에 맞게 서식 수정

5. 개정내용 해설

1 총 칙

(1) 법의 목적 (법 제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 …… …… …… .

〈해 설〉

○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천명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우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더욱 명확히 함

※ 헌재 1989. 9. 4. 88헌마22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

※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됨

(2) “정보”의 범위에 전자문서 등을 포함 (법 제2조제1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생략)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 ……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 .

〈해 설〉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되면서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함

○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사무관리규정 등의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상의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3) “공개”의 범위 확대 (법 제2조제2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 …… …… ……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해 설〉

○ 현행 법률은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등 Off-line상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서비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정보공개서비스의 신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

※ 정보통신망의 개념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

(4) 공공기관의 범위 구체화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가. 법 제2조제3호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 국가기관, ····· ····· ····· .

나. 영 제2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그 밖에 ····· ····· 1. ·····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 정 전	개 정 후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해 설〉

○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므로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도 국가기관으로 표현

○ 종전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던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위헌결정(2003. 9. 25)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

- 대상기관이 관련되는 근거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재분류
- 근거법률·재정지원여부 등을 토대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공무원연금법제47조에 대한 위헌결정
(2000헌바94, 2001헌가21 병합)

- 지급정지제도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등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서 투자·지원 등의 규모와 비율을 정하고 하위법규에서 대상기관을 선별하도록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규모와 비율에 상관없이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되어 그 범위의 획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함

2 공공기관의 의무

(1)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생략)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정보공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함

-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인터넷 정보공개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노력의무를 부여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노력의무

-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노력을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목록의 검색까지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2005. 7까지 구축할 예정

(2) 행정정보의 공표(법 제7조, 영 제4조)

가. 법 제7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1조(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전	개 정 후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외에 행정정보의 공표제도를 통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보완

○ 청구에 의한 공개방법은 공개여부결정, 수수료, 불복구제수단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한 행정정보의 경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됨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생략)

나. 영 제4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0조(정보제공) ①공공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 …… …… . ② …… …… …… 할 수 있다.

(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법 제8조, 영 제5조)

가. 법 제8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2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나. 영 제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생략)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공공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삭제>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해 설〉

○ 정보의 소재에 대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의 비율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공개를 개정 법률에 반영

- "주요문서목록"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으로 범위 확대
- 다만 목록자체가 비공개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

○ 부칙에 의해 법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

- 그 전까지는 주요문서목록 또는 기록물철등록부 등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정보의 소재를 제공하여야 함

(4)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영 제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21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③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②공공기관은 …… …… 그 밖의 …… …… 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위하여 …… …… .

〈해 설〉

○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편람을 작성·비치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한정적 열거주의)

※ 대판 2001두8827 :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동법 제7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1) 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 . 1. ……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 .

〈해 설〉

○ 법률·대통령령·조례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령·자치규칙과 같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는 비공개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판 2003두8395)

(2)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해 설〉

○ 개정전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자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라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법익과 국민의 알권리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교형량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함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3. ……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해 설〉

○ 비공개기준을 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해석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삭제하여 기준을 구체화

(4) 개인정보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6.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 정 전	개 정 후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가. 법령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나.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신 설〉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해 설〉

○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요건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함

○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가목), 공표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나목)

○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

※ 대판 2001두6425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대판 2002두1342 :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경영·영업관련 정보

개 정 전	개 정 후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생략)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해 설〉

○ 영업상 비밀이 영리목적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영활동”까지 포함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함

4 정보공개의 절차

(1) 정보공개청구(법 제10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신 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 …… …… …… ……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해 설〉

○ 공공기관과 청구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전자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구서 기재항목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추가

○ 법률의 취지상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의 사용목적과는 상관없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목적 삭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서의 기재항목에 공개방법을 추가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구술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판 2003두8050 :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구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2) 공개여부의 결정(법 제1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 제10조 …… …… 10일이내에 …… . ② …… …… …… 10일이내의 …… …… . ……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 문서로 …… .

〈해 설〉

○ 정보공개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그 연장기간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는 기간도 20일로 단축됨

(3) 정보공개심의회(법 제12조, 영 제11조)

가. 법 제12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 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 …… …… …… .

나. 영 제1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제2조 각호의 기관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이상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 …… 법 제12조 …… ……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 공공기관이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1. 공개청구된 …… ……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 …… ……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③(생략)	<삭제>
④(생략)	<삭제>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생략)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 …… …… 그 밖에 …… . ⑤(현행과 같음)

〈해 설〉

○ 개정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심의회 구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업무성격·업무량 등을 고려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을 정함에 있어 위원(위원장 제외)의 1/2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 다만 국가안보·외교·통일·국방·재판·수사 등과 관련한 국가기관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가능

(4) 정보공개일시의 통지(영 제12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 ……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 …… .

〈해 설〉

○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공개결정된 경우 10일이내에 공개를 실시하도록 기간을 단축함

(5) 청구량이 많을 경우 공개방법(법 제13조제2항, 영 제12조제2항)

가. 법 제13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영 제12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 설〉

○ 개정전에는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개정

○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를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수 정보의 전자적 공개

(1) 전자적 공개방법의 추가(법 제15조, 영 제15조)

가. 법 제1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비전자적 형태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환에 따른 행정력 투입이나 변환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임의규정으로 운영

나. 영 제1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생략) 1. ~ 3. (생략)	**제15조(정보공개방법)**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개 정 전	개 정 후
4.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 …… ……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 ……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 …… .

〈해 설〉

○ 전자적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저장매체(CD, 디스켓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

○ 청구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팩스나 전자우편 등에 의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확대

(2) 전자적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영 제16조제3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신 설〉	**제1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 설〉

○ Off-line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

(3)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영 제17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조(비용부담) 〈신 설〉	제17조(비용부담) ②법 제15조제1항 및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설〉

○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출력물·복제물 등을 준비함에 따르는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6 비용의 감면(영 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조(비용부담)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 3. (생략)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 …… . 2. ~ 3. (현행과 같음)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 설〉

○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

○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7 이의신청

(1) 청구인의 이의신청(법 제18조, 영 제18조)

가. 법 제18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6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 …… 제11조제5항의 …… …… …… 문서로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해 설〉

○ 개정전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불복구제요건을 완화하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로 개정

※ 대판 2001두6425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

나. 영 제18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9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신 설〉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해 설〉

○ 이의신청처리기간연장, 결정통보, 처리상황기록 등 세부사항 규정

- 기간연장통보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에 결정이유·불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의신청처리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이의신청(법 제21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9조(제3자의 이의신청등)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등) ①제11조제3항의 ……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 . ② ……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 , 제3자는 …… 문서로 …… . …… 통지를 받은 …… .

개 정 전	개 정 후
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해 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

○ 이때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으로써 제3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공개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간격을 둠)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법 제19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7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 ……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 …… . …… ……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소송) ① …… ……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 …… .

〈해 설〉

○ 개정전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불복구제요건을 완화하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로 개정

9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법 제22조, 영 제19조)

가. 법 제22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영 제19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해 설〉

○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

- 정보공개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수립, 운영실태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조정권을 갖는 비상설 위원회임

(2)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법 제23조, 영 제20조)

가. 법 제23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20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해 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의 위하여 9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보공개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한 비밀엄수의무가 부여됨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무원인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1조 내지 제23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해 설〉

○ 회의운영,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의견청취 가능

나. 영 제24조 내지 제26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신 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 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사무기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

○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기 타

(1)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법 제24조제2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②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제도총괄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 …… ……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 설〉

○ 개정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확인·점검에 그쳤으나,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

- 평가결과는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대국민 공개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요구조치

(2) 국회에의 보고(법 제26조, 영 제29조)

가. 법 제26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29조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해 설〉

○ 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고서에는 정보공개운영실태 및 그 평가, 시정요구 등이 포함

(3) 수수료 별표 개정(시행규칙 별표)

공개방법 /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비 고
	개 정 전	개 정 후	
문서·대장 등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 이상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종이문서 사본교부의 수준으로 경감 전자파일 열람의 수준으로 경감
도면·카드 등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 설정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	〃
영화필름	〃	〃	〃
슬라이드	〃	〃	〃
사진·사진필름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현행과 동일)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설정 및 금액 경감

〈해 설〉

○ 사본(출력)·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동영상 등 전자파일은 용량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

Ⅲ 행정정보 공표

행정정보 공표

1. 의의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2. 법적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동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법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

3. 공표대상 정보(조례 제6조, 규칙 별표 1)

4. 공표방법 : 시보 게재, 인터넷 게재, 인쇄물 발간

《별표》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

구 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조례 제6조관련)	세부업무	공표 주기	공표 시기	공표 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업무계획	연1회	당해연도 2월	인터넷게재
	예 산	수시	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
	결 산	연1회	시의회 승인일부터 1월 이내	〃
	기 금	연1회	시의회 의결일부터 1월 이내	〃
2. 시 및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부채현황	연1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	〃
	상환계획	연1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 이내	〃
3. 시장, 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장, 부시장, 실·국장	연1회	익년도 3월	〃
	원·본부장과 3급 이상의 장인 부서·기관	연1회	익년도 3월	〃
4. 인천대학교의 총장·학장·처장, 시립인천전문대학의 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인천대학총장·학장·처장, 인천전문대학 학장·처장	연1회	익년도 3월	〃
5. 출연·출자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당해기관의 장 및 주요임원	연1회	익년도 3월	〃
6.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	평가결과	연1회	익년도 1월	시보게재 또는 인터넷게재

구 분		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6조관련)	세부업무	공 표 주 기	공 표 시 기	공 표 형 태
7.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수질검사결과	수시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대기·소음	수시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
	기 타	수시	검사종료일부터 1월이내	〃
8.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교통속도 및 교통량	연1회	조사완료후 1월이내	〃
	쓰레기발생량	연1회	익년도 3월	〃
	인구 및 세대 통계	연1회	익년도 1월	인터넷게재 또는 인쇄물발간
	산업통계	연1회	12월	〃
	도시계획통계	연1회	12월	인터넷게재
9.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1회	익년도 2월	인쇄물발간
10.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 종합계획	수 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부문별 중기계획	수 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
	부문별 장기계획	수 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
	중요한 기본계획	수 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
11.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수수료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수 시	계획확정일부터 1월이내	시보 또는 인터넷게재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용역사업결과	수 시	용역완료후 1월이내	인터넷게재
13.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

구 분		공 표 방 법		
행 정 정 보 (조례 제6조관련)	세부업무	공 표 주 기	공 표 시 기	공 표 형 태
14.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	수 시	시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인터넷게재
	예산집행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
1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재 난	수 시	수시(연1회이상)	〃
	수 방	수 시	수시(연1회이상)	〃
16.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내역	10억원이상의 공사	수 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
	1억이상의 물품구매	수 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
	1억이상의 용역	수 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
17. 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설계변경사유 증감된공사비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
18.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내역	수의계약내역	수 시	계약완료후 1월이내	〃
19.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행정심판 재결결과	수 시	종결후 15일 이내	〃
	지방세이의 신청심의결과	수 시	종결후 15일 이내	〃
	지방세심사 청구심의결과	수 시	종결후 15일 이내	〃
20.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개최내용, 결과	수 시	위원회개최 완료후 1월이내	〃
21.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공청회결과 보고서	수 시	공청회개최 완료후 1월이내	〃
22.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민원사무편람	수 시	편람제작완료후 1월이내	〃

Ⅳ 행정소송 · 심판 사례

행정소송 · 심판 사례

1. 행정소송 판례

사건번호 : 대법원 2000두 9212
피　　고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개요
- 원고는 '97. 11. 4 (주)△△△ 등 5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다는 신고건에 대하여 피고가 '98 .3.12 무혐의 결정통보를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무혐의 조치 공문의 근거서류일체의 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98. 6.11 해당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인용

○ 피고는 원고가 신고인으로서 단순한 단서 제공자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임

○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대상은 무혐의 통지의 근거서류일체에 대한 공개청구임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제1심법원에 소송계속중, 원고는 당초의 정보중 "공정거래위원회 제△△회 심사조정회의에 상정된 서류 등"의 공개거부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알 수 있듯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당초의 정보는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됨

○ 피고는 이사건 정보가 제품의 특성, 유통경로, 가격결정구조 및 제조원가 등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고, 비공식적 내부기구인 심사조정회의의 의사결정근거까지 공개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사업자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명의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제1면의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각 경정함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02구합1784호, 서울고등법원 2003누 6438호
피　　고 : ○○교도소장
사건개요

- 원고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지병으로 간경화 및 합병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2002. 5.23. ○○교도소로 이송되자 원고는 2002.10. 7. 피고에게, 법무부 교정국이 2002. 5. 4. 교정기관에 하달한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10.18. 원고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를 비공개 결정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행형법 제12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는 수형자(수용자)에게는 수용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환자(수용자)이송지침서에는 전국 수용시설(교도소 등)의 역할, 기능, 특정수용자의 특별지역 이송 등 수용자의 적정처우 및 교정교화를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환자(수용자) 이송지침서에 관한 정보는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의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환자(수용자) 이송 지침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 2873
피　　고 : ○○교도소장
사건개요
- 원고는 ○○교도소 교정교화위원 등 교정참여 인사 등이 기부한 기증금품에 대한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며 기부내역 및 사용처 현황을 밝히고 직원인 교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교회사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교회사의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의 부적정성, 교회사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정보비공개 처분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①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정보는 교정기관장인 피고 등이 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정보 속에는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 및 평가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소정의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피고가 이 사건 정보가 원·피고간의 당원 2002구합2873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정보임을 고려하여 위 정보의 열람만을 허용하여 소송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찾을 수 없음

○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절하고, 달리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03구합 1204
피　　고 : ○○교도소장
사건개요
- 원고는 진행중인 다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만들고자 2003. 4. 9. 신분장 시찰(작업지정)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사본을 요구
- 이에 대해 피고가 교정업무의 다양한 성질상 집행과정에서의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자료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열람공개만 한 바, 이는 피고가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이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열람결정하여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①항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제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교정기관장인 피고 등이 교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수용자의 개별신상과 각종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과 판단을 기록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보 속에는 교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정기법이나 수용자들에 대한 통제 및 평가방법 등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원·피고간의 당원 2002구합2873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정보임을 고려하여 위 정보의 열람만은 허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취소소송에서 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사건번호 : 광주지방고등법원 2003누 857
피　　고 : ○○교도소장
사건개요
- ○○교도소 수형자 이○○이 제출한 법무부에서 수용자 1년 부식예산 내용과 1년 부식예산 중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피고는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행형법시행령 제84조에서 '환자의 주식·부식 기타 영양물은 교도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의 집행을 받는 수용자에게는 음식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주식과 부식의 예산 내용 및 그 예산의 사용내역에는 ○○교도소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주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피고의 음식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등 수용자의 적정한 처우 또는 교정교화를 위한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갑 제7호증의 3,4,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을 제4호증의 2,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월별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통하여 식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및 단가등을 수용자들에게 알리고 있고, 수용자들에게 배포되는 설문서를 활용하여 수용자들의 식단에 대한 의견을 식단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수용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행형법의 취지등을 모두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월별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등을 넘어서는 주식과 부식의 예산 내용 및 그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피고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2001년도 주식과 부식의 예산 내용 및 그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307
피　　고 : 정보통신부장관
사건개요

- 에셜론(Echelon)이라 함은 미국주도로 상업적,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120개의 첩보위성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도·감청 시스템으로서 원고는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 8. 국방부에게 에셜론 가입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함
- 국방부는 2003. 1. 9. 피고에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 13. 피고로서는 에셜론의 존재 및 가입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에셜론의 가입과 관련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에셜론 가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지 않아 그와 관련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에셜론의 존재 및 가입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비공개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상의 흠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그 정보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는 에셜론 가입과 관련된 문서의 소관기관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이송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송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에셜론의 존재 및 가입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01구00000
피　　고 : △△공단
사건개요
- 원고는 2000. 10. 28 피고에게, 원고의 답안지를 포함하여 1995. 6.11 실시한 제3회 자동차검사기사 1급 실기시험문제 B형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 일체의 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원고의 답안지를 제외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는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다는 내용의 답신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원고의 공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0.11.28.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원고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95구△△△호 및 서울행정 법원 2000구00000호 사건의 소송절차(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답안지를 각 공개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답안지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원고가 지득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또다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 원고의 답안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데, 갑3, 을1-2, 2,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한 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1995. 6. 11. 실시한 제3회 자동차검사기사 1급실기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같은 해 7. 18로부터 1년이 지난 1996. 7. 23. 위 서울고등법원 95구00000호로 소송이 계속중인 원고의 답안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대하여 폐기결정을 하고, 같은 해 8. 7. 이를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답안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의 답안지에 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은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답안지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4502
피　　고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사건개요

- 2002.1.22. 원고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적법한 기준과 재료로 제작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업활동으로 인한 제품하자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실시한 기계식주차장치사용검사 관련서류 14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이에 대하여 공단은 2002. 1.30. 기계장치검사표 등 3종에 대하여만 부분공개 가능하고 그 외는 제작사의 설계기술 누출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 등이 수반되어 비공개함을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공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되었음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드는 한편, 그 가목에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에서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조성이나 제작과정의 공식 등 기술적인 비밀을 가리키고, 그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란 권리뿐만 아니라 경쟁상의 지위 등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비밀의 내용과 성격 뿐만 아니라 당해 영업과 그 주체의 특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쟁상태에 있는 영리기업은 사실상 독점또는 과점상태에 있거나 경쟁이 제한된 업종의 기업보다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서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제작과 성능에 관한 구체적 자료로서 그 설치자의 기술적인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영업상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치의 제작·설치가 사실상 독점 또는 과점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경쟁이 제한된 업종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서류가 공개될 경우 그 제작·설치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그리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제한되어있지 아니한 사업활동의 결과 국민의 제한, 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서류가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원고 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특정 기계식 주차장치의 결함 유무는 그 주차장치 자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3조에 기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처분근거로 든 점에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고등법원 2002누 19086
피　　고 : ○○지방국세청장
사건개요
- 2001. 7.10 피고는 ○○사 세무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관련 지침 등에 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이 사건 정보 중 “조사사무처리규정”과 “법인조사관리지침” 전부, 그 중에서도 특히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세무조사 실시방법 및 내부적인 사무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탈세 및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노출, 각종 세무관련자료의 해킹 등으로 세무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과세를 통한 국가재정의 확보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다할 것이나, 그 중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비교적 적은 반면,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제공 및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에 적잖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조 내지 제43조 부분(제1장 총칙 중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대상자 선정, 제3절 세무조사 실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함이 상당하고, 위 규정만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위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나머지 부분과 “법인 조사관리 지침”은 피고들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 이 사건 정보 중 “개별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입법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단순히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아니라 “과세정보”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함

○ 과세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특정 개인들에 관한 언론사 주식보유현황과 그 변동내역, 회사자금처리업무 등에 관여한 내역, 세무조사시 답변한 내용 등의 정보(주식이동상황명세서나 전말서 등)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 그 시기 및 세무조사의 내용과 결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사의 수입·지출상황, 각종 자금조달과 회계처리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 납세내역과 추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경쟁 언론사에 대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노출될 경우 당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과세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대부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분리하기 어렵거나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그것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경우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정보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 중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조 내지 제43조(제1장 총칙 중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대상자 선정, 제3절 세무조사 실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처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일부 취소하며,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함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01누 2171
피　　고 :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남구청장, 울주군수
사건개요

- 원고는 예산감시운동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00.6.29.자 피고들에게 '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금액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의 사본 공개를 요구
- 피고는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복사본을 열람 공개하겠다고 '00. 7. 29.자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각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정보공개법 제1조와 제6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방법을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에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개대상정보의 성격상 청구인이 정보를 얻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피고들이 해당 자료의 상당부분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었으므로 새삼스럽게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본열람만 고집할 경우 상당시간 입회하여 유출 여부 등을 감시하는 등으로 행정력이 추가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사본교부의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시민단체나 개인의 같은 방법으로 청구가 뒤따른다는 것은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속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할 것임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익과 공익의 비교·교량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의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임

○ 한편, 행사 참석, 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인이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피고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금품수령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적법하고, 그 나머지 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금품수령자인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함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03구합 2186
피　　고 : 울산광역시장
사건개요
- 태화강에 면접해 있는 태화들은 당초 하천연안부지로 용도 지정된 토지인데 울산시는 위 부지를 자연녹지로 일단 용도 변경한 후 다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편법을 사용한 바에 따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 원고들은 2001. 3. 16.자 울산시에 대해 15개 문건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이중 12개 항목은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3개 항목은 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하여 비공개 결정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인용

○ 이 사건 정보중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는 비공개사유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정보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위 제1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2조는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례 제52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회의록을 사후까지 비공개정보로 한다는 내용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소정의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는 없음

○ 다음은 위 제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공개할 경우 위원의 신분, 직위 등으로 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누가 심의위원인지와 위원회 회의에 누가 참석하여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지 정도는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로 인하여 위원이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원 스스로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갑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의 변경이 결정되자 그 절차상의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인근에 제방을 축조함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 태화강연안의 대나무숲의 보존의 필요성,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 홍수대책, 도시미관 등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및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비공개정보 중 제1항(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2항(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중 제1항, 제2항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

○ 이 사건 정보중 제3항(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중 제3항의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제3항의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대법원 2002두 9391
피　　고 : 성남시장
사건개요
- '98, '99, '00. 1~6월까지 성남시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영수증등 지출증빙서류의 각 사본 청구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업무량과다, 개인영업상비밀보호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함

< 판결 내용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

○ 원심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행사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볼 수 있지만 이 중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외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사건번호 : 대법원 2003 경행심 115
피　　고 : 덕양구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고양시 덕양구 관내 양어장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유료낚시터로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는 유료낚시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에 피청구인에게 수회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행정감시 및 사법기관에 직접 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내 8개소 양어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조건 및 설계도면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신청함
- 이에 피청구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 등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신청한 행정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양어장설치허가서, 설계도면에는 피허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과 허가위치, 조건과 같은 허가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 그리고 청구인은 위법행위자들에 대해 피청구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계고서, 고발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단속,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중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제3자의 허가관련서류는 단지 행정감시와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제한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중 2002.2.4자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2003.2.8자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 대법 3부 2003두7354
피　　고 : 경상북도지사
사건개요

- 원고는 경상북도지사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받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억 4,500만원(매년 12억 900만원)에 대한 아래 집행내역과 관련증빙서류 등에 정보공개 청구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량이 과다하여 그 사본·출력물의 교부가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본·출력물의 교부를 거부하고 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후 원고가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본·출력물을 교부하겠다고 결정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기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된 정보의 양,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작에 들어갈 비용이나 노력, 당해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것으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 1736
피　　고 : 경상남도지사
사건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였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불공정한 심리, 의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2003. 6. 11. 피고에게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함
- 이에 피고는 2003. 6. 17. 원고에 대하여 회의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처분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이 사건 행정심판회의록 비공개결정 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법 제26조의2가 위헌으로서 무효인 법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 대법원 (제주)2003누89
피　　고 :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
사건개요

- '99년도, 2000년 1월부터 6월말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증빙자료 일체에 대한 원고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도 및 4개 시·군의 부분공개 결정함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지출증빙서 사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공개 대상이며, 개인의 인적사항은 투명성 보장의 이익보다 크다할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이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공개해야 하나 개인적인 자격으로 행사등에 참석한 경우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격려금 등을 수령한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비공개 되어야 함

○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별지 제4목록(공개에서 제외되는 정보) 기재의 정보에 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니,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행정합의1부, 사건 : 2002구합9768
피　　고 : ○○중학교장
사건개요
- 원고는 ○○중학교 교사이자 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학교회계등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2002.4. 30 피고에게 2001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일체의 복제물 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에 피고는 2002.5.30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복제물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등을 이유로 비공개결정함

<판결 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 세입수납부, 지출일계표 등은 당초부터 피고가 문서로 작성한 바 없거나 현재 ○○중학교 동창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항들로서 피고가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세입징수부, 지출부, 지출증빙서류 등의 정보공개청구 부분과 관련, 이는 이미 그 집행이 완료된 ○○중학교의 '01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문서들로서 달리 위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수입 또는 지출의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들은 정보 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세출 관련 지출부 및 증빙자료철 제외시 정보의 분량이 많지 않아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 정보를 이미 공개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산내역이 기재된 세출결산서의 공개만으로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위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세입관련 수입입계표, 세출관련 지출계좌이체서, 세입·세출관련 증빙자료철등은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은 ○○중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자료들을 우선 열람하고 그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사본교부를 요구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사본교부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 정보들 중 위 지출계좌이체서나 증빙자료철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명단과 지출증빙서류의 정보공개청구 부분과 관련, 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시 학교의 이해관계자 또는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학교발전기금의 기탁금액에 대하여는 학교발전기금 관련 현금출납부에 일자별로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제③, ④호, 제3항 제①, ⑤, ⑥, ⑦호, 제7항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기각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제②, ⑤, ⑥호, 제3항 제③, ④호, 제5항, 제6항 제②, ③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함

2.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1657
피청구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11.25.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고충민원(2002고충9014) 처리와 관련한 고충민원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기록서, 고충민원요약서, 고충민원실 지방문조사보고서, 고충민원출석조사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고충민원안건상정요구서, 고충민원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소위원회회의록, 고충민원의결서, 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 재심민원검토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민원에 대해 실질방문 및 출석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없는 점과 재심요구서에 대한 의결서는 관련민원이 단순안내민원으로 작성대상이 아니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보하고, 기타 공개요구정보는 내부의견 표명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한법률제7조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통보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고충민원 실지방문조사서, 고충민원 출석조사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 부분에 대하여, 관련민원은 단순안내회신 민원으로 실질방문 및 출석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없으며, 재심요구서에 대한 의결서도 작성대상이 아니어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 고충민원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재심민원검토결과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음

○ 고충민원 기록서,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기록서, 고충민원요약서, 고충민원 안건상정요구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성명, 민원제목, 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 등이 주내용으로 공개되어도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관한법률제7조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함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11401
피청구인 :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청구취지

- 청구인은 협력요원 6기로 태국에서 활동(2000.8.21.-2002.8.20)후 ○○○ 태국사무소장의 동인에 대한 "복무실태점검 결과보고서" 및 "여타 단원들과 협력단 본부 직원간에 교신한 E-mail 서신"을 공개해 줄 것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중 청구외 태국주재 11기 및 12기 봉사단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들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국제협력요원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에 의하면,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개인 신상에 관한 이메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이메일 자료가 이미 삭제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중 피청구인 소속 전태국사무소장인 청구외 ○○○의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동법 제8조제2항,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제6호,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 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지난 2002.12.2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보고서 등을 열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 공개대상 정보임을 자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열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7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3. 4. 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③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 ⑤2002행심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서, 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⑦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 ⑧정부보관금취급규칙, ⑨계규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의 정보공개를 신청
-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2.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②, ④, ⑧에 대하여는 공개하나, 위 ①, ③, ⑦의 정보는 대상 정보가 폐지되었고 ⑤의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⑥, ⑨의 정보는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①, ③의 규칙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지침이 이미 폐지되었고 새로 제정된 ②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 ④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을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비록 위 지침과 규칙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1999. 12. 30. 총리령 제78호) 제5조제1항 및 부록(훈령 및 예규의 원본은 보존기간 30년)에 의하여 위 지침 및 규칙을 보존·관리하고 있고, 위 ①, ③의 규칙이 새롭게 제정된 ②, ④의 규칙과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임

○ ⑤에 대하여 그 내용이 동일한 의결서를 당사자의 이름, 주소, 교도소명, 국가배상청구사건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란으로 처리한 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부분은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고 이것이 달리 청구인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분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⑥, ⑦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수용자관리지침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수용자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된 것으로서, 위 두 지침은 규정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위 지침에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신체·휴대품 검사방법, 출정·이송시 계호방법, 접견시 관리방법, 서신검열, 거실 검사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마약류 사범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의 예방 및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피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행정심판위원회 2002행심33
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의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30.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대신 이와 내용이 유사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열람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함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8. 피청구인이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사본 교부의 방법이 아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용자 진료에 관한 교정행정 예규집"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대신 이와 내용이 유사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 청구인으로서는 위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을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 청구인이 공개의무가 없는 동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개의 의무가 없는 동 정보에 대하여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5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피청구인은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의무적으로 작성·비치해 놓고 공개해야하는 기초정보로서 즉시처리 가능 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본으로 공개를 해야하며 또한 청구인이 자료공개를 타기관에 미루지 말고 규정대로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생산년도 등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교도소의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사본의 방법으로 공개하라고 하고 있으나, 생산년도 등이 불특정한 문서를 사본 공개하기에는 그 양이 과다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 곤란하며,

○ 또한, 청구인은 2000.10.06 △△교도소 수용 당시 □□교도소의 정보공개편람 등을 열람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 취지의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수용되는 각 교도소마다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교정행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본 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62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판단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교정의 투명성과 수용자 개인의 권익을 비교,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함

○ 수용자 진료기록부의 경우, 수용자의 진료기록 외에도 수용자 관리와 관련된 기밀성이 존재하므로 일반사회의 진료카드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 중 구속일로부터 2001.11.30까지(약 4년 6개월간)의 기록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청구인의 진료부에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공개는 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용자 진료카드에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리고 공개할 수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 중에 일부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정보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본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1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02.11.27 의성지청 "수감중인 조직폭력배 관리철저"공문」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2002.11.27 의성지청 "수감중인 조직폭력배 관리철저"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형의집행·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행하였으며,

○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한 「2002.11.27 의성지청 "수감중인 조직폭력배 관리철저" 공문」은 교정시설의 수용질서 및 규율확립을 위한 내부적인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 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처분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본 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처분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심판위원회 2003행심12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직폭력·향정사범등 특정강력범중 특별관리자의 비연고지 이송 등 개선방안」과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 지침」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수용시설의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와 규율확립을 위한 직원 근무지침으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 결정의 처분을 하였으며,

○ 청구인이 요구하는 조직폭력·향정사범등 특정강력범중 특별관리자의 비연고지 이송 등 개선방안」과 「조직폭력사범 수용관리 지침」 공문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25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①재소자간 폭행, 상해 등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②징계시효에 관한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보부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2003.4.8.피청구인에게 ①정보공개법 ②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공무원근무 사항에 관한 규칙 ④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⑤국가공무원법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⑦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⑧재소자 주, 부식 급여규칙 ⑨재소자간 상해, 폭행치상 등 규율위반 행위에 관한 기준 ⑩징계시효에 관한 지침 등 10개항의 정보공개요구 중 ①~⑧항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⑨,⑩항목은 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교정기관의 비리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요구한 위 10개항의 정보공개요구 중 8개항에 대하여는 기공개하였고 비공개한 2개항인 제⑨,⑩항은 근무자가 근무중 주의할 근무지침으로서 이는 정

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 교정,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시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결정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은 비리 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본 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처분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심판위원회 2003행심35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수용자 관리지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로서, 피청구인이 마약류 위반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지 알고자 정보공개 요구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용자 관리 지침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 청구인이 요구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수용자관리지침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와 근무자들의 근무지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며,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 제20호
피청구인 : ○○구치소장
청구취지
- 1995.5.5 청구인이 부산구치소 수용당시 ○동상 ○실내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확인, 가해자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기타사항 등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항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조항을 들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청구인의 민사소송제기라는 "사인간의 문제"가 공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도 청구인의 권익만을 고려 할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임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 제53호
피청구인 : ○○구치소장
청구취지
- ○○○ 변호사의 2002. 7. 1~2003. 6.30까지 선임계를 부산구치소에 제출한 총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그 행사는 다른 법익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 변호사의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선임계를 제출한 총 건수에 대한 정보는 개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가 부당히 공개될 경우 타인에게 영업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상기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2행심33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수용자건강진단 규칙외 5건의 문서에 대하여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다른 건은 공개하고, 수용자건강진단 규칙은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은 법무부가 일선 교정기관 직원이 수용자건강진단과 관련된 업무수행 지침으로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을 초래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용자 건강진단규칙을 살펴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건강진단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도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개한다고 하여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를 공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 건 청구를 인용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42
피　　고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①정보공개 편람일체, ②2003년 1/4분기 ○○교도소장 공무상 지출한 판공비 내역 일체, ③○○교도소의 민형사상(승패소)건수, 내용, 소송비용 배상금 일체, ④○○교도소 각 과별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일체, ⑤○○교도소와 계약체결된 폐기물처리업체 명부내역, ⑥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⑦○○교도소 의무과에 비치된 적출물 처리대장, ⑧의무과 진료중 발생되는 적출물 및 폐주사기 처리현황 및 2003년 1/4분기 일체, ⑨2003년도 1/4분기 ○○교도소 외부병원진료 수용자 진료비 관비 지급 내역 일체, 2003년도 1/4분기 ○○교도소 방역실시 계획서 및 실적에 관한 기록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대하여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는 공개라함은 공공기관이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14조에서도 공개의 방법으로 열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공개 편람을 공개한 것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 보겠으며, 의무과 적출물 처리대장과 의무과 적출물 및 폐주사기 처리에 관한 현황과 의무과 방역실시계획서 및 실적에관한 기록은 적출물 처리업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2조 동시행령제14조 규정등에 의거 이에대한 부분공개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교도소장의 공무상 지출한 판공비, 즉 업무추진비와 각 과 업무 추진비는 국가기관 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출, 직원에 대한 포상, 격려 및 사무용품 구입 등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내역서 일체를 공개할 경우 국가기관 운영 및 교정행정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특정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 6호에 의거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위법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교도소 민형사소송(승소·패소)관련정보 및 계구의 제식과 사용절차에 관한 규칙, ○○교도소 외부병원진료 수용자 진료비 관비 지급내역서 일체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있고,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며,

○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 등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 6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48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용자관리 지침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요구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수용자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와 근무자들의 근무지침으로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며, 형을 집행하거나 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정이며, 특히 이러한 지침은 공개될 경우 특정수용자 등이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51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03. 5.26 교정시설인권사각지대해소지침,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서무과·보안과·교무과·용도과·의무과 '02년도 생산 주요문서목록 등에 대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처분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법무부 훈령인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정은 계구의 사용요건, 계구의 사용법, 계구의 관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와 근무자들의 근무지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침의 내용이 수용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교정교육이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관련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겠으며,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위 지침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각과 주요문서목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전자결재의 시행으로 인하여 문서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문서목록은 수정 작업중에 있어 작업이 완료되면 공개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22조는 일반국민의 정보공개편의를 위해 문서목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항에서 정보공개는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임

○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구체를 위해 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기타 민원제기를 통하여 그 해결이 가능함에도 굳이 정보공개제도 또한 기타 구제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같다고 하겠으나 정보공개법 자체가 헌법소원제도와 같은 보충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권리구체를 위한 다른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겠음

○ 따라서 2002년도 각과문서목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고,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58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피청구인 ○○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장의 부적절한 의료처우는 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하고, ○○교도소장의 청구인 본인의 진료카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이송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신의 건강이 수용생활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수차례 정보공개청구, 민원제기, 행정심판 등을 하고 있으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많은 불신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본인 진료카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임

○ 다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용자 진료 카드에는 일반사회의 그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직접공개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리고 공개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중에 일부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정보 전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진료카드 비공개결정에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 55호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 8.12 ○○교소장을 상대로 '02.3.~'03.8월 현재까지의 청구인 본인의 진료카드, 수용자 외부진료에 관한 예규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료카드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였으나 수용자 외부진료에 관한 예규는 부존예규이나 그 취지로 보아 수용자의료관리지침(예규관리제625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은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보공개법 제 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처분을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밝히지 못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받기위해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의 내용을 알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자 자신이 그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의

내용도 교도소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제척기준을 제시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지침이 수용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일부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여 교정행정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2881
피청구인 : ○○지방교정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육교화 운영계획 및 사회적 처우(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관계철, 특이수용자 관리감독 및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사항(편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2.18 위 정보 중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과 2002년도 사회적 처우(합동접견, 부부만남의 집) 실적을 공개하였으나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사회적처우 관계철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6호(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은 정보공개법제7조 제1항 제4호(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에서 교육교화 운영계획 및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편람)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01. 2. 3 청구인이 ○○교도소 재감당시 피청구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교육교화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1. 2. 6 ○○교도소 재소 당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제공받은 목록 중의 동 교육교화 운영계획은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동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법무부장관이 '03. 1. 15 산하기관에 통보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시달문서(교화61490-23)에 의하면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각 소장이 '03년도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어 수용자를 직접 교육교화하는 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

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편람"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정기관 훈령예규집의 목차 제2편 제2장 특이수용자 관리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편람은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수용자 관리지침, 조직폭력사범 수용자관리지침 및 외국인 처우지침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 바,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편람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업무지침으로서 공개됨으로 인하여 특이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수용질서 등을 문란시킬 우려가 있는 점,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는 동 훈령 예규집을 열람, 복사, 발췌 등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동 편람은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3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정보 공개물에 대한 사본교부 불허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2003. 2. 28 ○○교도소장을 피청구인으로 ① 수용자 보고문 접수부, ② 보고전 처리부, ③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대한 사본을 교부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개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교부를 불허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한 것이며, 전문서적이 없는 의무과에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①항 수용자 보고문 접수부 ②항 보고전 처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열람공개 결정에 동의를 하고 열람을 하였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보

며, ③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미 출소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수용자 건강 진단부를 수시로 열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또한 본인의 건강관리에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본교부에 필요한 경비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요구할 시에는 본인의 건강진단부를 복사해 주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현재 신분이 출소자라는 점을 감안 할 때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용자 건강진단부 사본교부에 필요한 경비는 청구인 부담으로 인용하고, 수용자 보고문 접수부와 보고문 처리부는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52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 청구인이 2003. 6.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생산 서무과 및 의무과 문서목록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교정에 관한 업무란 구금을 통하여 사회를 방위하는 동시에 수용자에게는 인성교육, 학과교육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성을 배양케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볼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형의집행, 교정에 과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도주나 교정사고를 직접야기 할 위험성이 큰 정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임

○ 다만,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서무과 및 의무과 문서목록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문서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22조는 일반국민의 정보공개편의를 위해 문서목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45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①음식물 쓰레기관계철, ②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기록부, ③취부교육일지, ④급식관리회의록, ⑤생산명령부, ⑥식료일표, ⑦물품구입검사부, ⑧부식차림표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문서중 취사부교육일지와 생산명령부는 수용자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을 위한 내용들이 기재된 자기사용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 문서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를 문란케하고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된 것은 정당함

○ 그 외 음식물쓰레기관계, 급식관리 회의록 등은 급식에 관련한 내부문서로 수용자 인적사항과 국가보안목표시설 등 보안사항 등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6호에 의거 비공개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45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8.11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영치금사용내역서 등 41건의 정보공개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관련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송수행 및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행사임을 주장하나,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청구인 개인만을 위해 이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공개청구에 일일이 답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다른 일상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59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8.26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교도관일일근무일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일일근무일지는 그 내용에 근무자의 성명 및 관리 수용자의 칭호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도 기타 접견, 출정, 인수인계의 내용, 감독자의 지시사항 등 일반 수용동정이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교화와 관리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 정보가 부당히 누출되어 사인의 권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21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3.3.19.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관련 공문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청구인이 B교도소에서 A교도소로 이송관련 공문서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정소송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이송과 관련된 공문서는 생산시 비공개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4호에 의거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 곤란하게 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 처분을 한 것이고,

○ 청구인이 B교도소에서 A교도소로 이송된 것은 사기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지검 ○○지청의 요청에 의한 법무부 지시공문에 의거 조사 종료후 A교도소로 환소 조치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처분 결정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나,

○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청구인을 이송 집행 전에는 비공개함이 정당하나 현재 청구인에 대하여 이송집행을 완료하였고, 또한 이송지시공문은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이 이미 B교도소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문서로서 비공개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B교도소에서 A교도소로 이송관련 공문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토록 인용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22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3.3.20. 문제수용자 동정기록부 및 수용자 신분카드에 있는 문제수 동정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문제수 동정기록부와 수용자 신분카드에 기록된 동태(시찰)보고사항은 수용자의 개별처우와 인권을 보호하고 기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근무자가 주요 동태사항과 처우의견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비공개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1항 4호에 의거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본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24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3.3.21. 수용자 건강진단부 기록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청구인이 요구하는 수용자 건강진단부 기록 일체를 공개한다면 교도소 의사가 작성한 진단이나 소견에 대하여 불만과 상반된 의견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여 수용질서가 자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7조 1항 4호에 의거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의 본 건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나,

○ 수용자 건강진단부는 개인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문서로서, 교정기관이 작성한 문서이고 제3자 및 교정행정업무와 아무런 관련된 정보가 없고 피청구인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건강에 관한 알권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를 공개 인용함이 상당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23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용자 건강진단부사본 공개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피청구인측의 의무과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안동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무시하고 공중보건의의 상관인 의무과장의 지시도 없이 임의대로 청구인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의 상관인 의무과장을 만나 보아야 되겠다는 말에 대하여 불쾌감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진료기록을 기록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위하여 진료기록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 수용자 진료는 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무과장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중보건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처방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신경안정제 등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진료카드에 감정적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진료기록부를 비공개 결정으로 처분한 것은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며 이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적법·타당한 것으로 본 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피청구인은 주장하나,

○ 본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환자와 의사(공중보건의)의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수용자 건강진단부를 공개하기로 의결함

사건번호 :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46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①수용자급양관리지침 ②재소자 주·부식급여규칙 ③부식(식품)선별기준 ④부식 배합규격서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은 1963.2.9 법무부령 제57호로 제정된 후 2001.8.31 법무부령 제508호로 개정된 규정으로 이는 소위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미 일반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용자 신분임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본 규칙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개시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에 관한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수용자급양관리지침과 식품의 선별방법 및 표준배합규격서는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원활한 급식공급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지침으로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어서 공개될 경우 특정수용자 등이 이를 악용하여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01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12. 5. 피청구인에게 교무과 서신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이에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02.12.10 및 '03. 1. 3경 담당근무자 입회하에 열람.

< 심판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의 서신표 공개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신표는 기본적으로 신분장에 부속되는 서류로 신분자의 일부임을 주장하고 있고, 신분장 등 교정관련 문서는 수용자의 신분처리, 즉 처우전반에 대한 의견 등이 기록되는 문서로 교정당국이 내부적으로 수용관리를 위한 자기사용의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특히 타공공기관의 문서에 비해 범법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그 기밀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때, 사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고 담당근무자의 입회하에 열람시켜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소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문서, 도면,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 방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재량이라 할 것이며, 정보공개가 사본의 방법으로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소송자료로서의 제출은 법원 등에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청구자료의 열람·이용을 불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사본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03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12. 28. 피청구인에게 기증금품관리규정(소모품관리대장, 기증금세입세출에 관한 통장), 수용자 교육교화예규지시공문 및 수용자 복지예규, 훈령, 시행규칙 지시공문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이에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 심판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수용자 교육·교화예규, 지시공문 및 수형자복지예규, 훈령, 시행규칙, 지시공문 등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지 불분명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소모품관리대장 및 기증금에 관한 세입·세출외 출납통장 등에는 기증자 등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직장,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누설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들 자료는 피청구인이 기증자의 기증을 받아 기증취지에 적합하게 사용 후 처리사항을 기증자에게 통보해 주고, 이의 적성한 사용 등에 대해 사후에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항으로 청구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공개할 실익이 없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07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12. 2. 피청구인에게 법무부장관령 내부지침(금속수갑착용대상자 및 사용기간, 연쇄착용방법) 및 건강기록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에 불복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각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

< 심판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법무부장관령 내부지침(금속수갑 착용대상자 및 사용기간, 연쇄착용방법 및 기간)은 행형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훈령 제333호)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금속수갑의 착용대상자 등 계구사용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것은 행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이미 널리 공포된 사항이라 하겠으며, 연쇄착용방법 등 동 훈령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피관리자인 수용자의 보호와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계구의 제원이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관리자인 근무자들이 알아야 할 업무지침으로 피관리자인 청구인이 알아야 할 실익이 없으며, 공개할 경우 교도소의 안전, 질서유지 등 형의 집행, 교정의 직무수행에 있어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용자 건강진단부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법제21조에 의거하여 공개청구하고 있으나, 외부 일반인이 아닌 교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 등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신분장부의 일부로 단순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수용관리상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동태사항 등 피관리자인 수용자의 행동 등에 대한 의견 등이 기록되는 문서로 공개할 경우 교도소의 안전, 질서유지 등 형의집행, 교정의 직무수행에 있어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09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12.0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84. 09. ~ 1994. 10. 25.의 신분장부 일체에 대한 열람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02. 12. 1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형의집행·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범법자를 수용 관리하고 있는 교정기관은 피관리자인 수용자를 처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용자 및 기타 관계자의 명예 등에 관한 사항, 교정처우상 고려되어진 사항, 교정당국만이 직무상 알아야할 사항 등이 기록되 내부적으로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자기사용의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들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타 공공기관의 문서에 비해 그 기밀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임

○ 수용자 신분장부의 경우 각종 동태시찰 등 수용자의 신분처리 즉 처우전반에 대한 의견 등을 기록하여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자기목적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현재 수용되어 있는 피관리자인 수용자에게 공개할 경우 교정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0
피청구인 : ○○교도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3. 01.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01 ~ 2002. 03.의 직원회 운영경비 집행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03. 01.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직원회 운영경비 집행계획이란 직원회에서 소용되는 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예산집행 분기 도래 전에 교정협회에 다음 분기 직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확정된 자료

가 아닌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직원회와 관련된 영업상의 비밀이 누설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원회 운영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
피청구인 : ○○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및 승인내역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는 신청인란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청인의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습근로자의 취급업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액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필요로 하는 이유 등은 기업 고유의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행심03-00000
피청구인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 2. 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7. 개최된 (주)○○중공업 ○○○ 부지회장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①신청인, 피신청인 입증자료 및 부의안, ②심문회의 회의록, ③판정회의 회의록 ④그 외 관련정보 등의 자료에 대한 공개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12.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가운데 청구인에 대하여 ③판정회의 회의록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고, ①신청인, 피신청인 입증자료 및 부의안, ②심문회의 회의록, ④그 외 관련정보 등은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3. 7. ③판정회의 회의록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각결정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판정회의 회의록은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3. 2. 12.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동 위원회의 판정회의 회의록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공익위원들이 발언한 판정의견과 이유 등이 기록되어 있어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판정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판정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11268
피청구인 : 대한주택공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02.10.15 및 '02.1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95.1.1.부터 '96. 12.31.까지의 '주민대표협의회 회의록 및 주민대표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 '신림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주민대표협의회의 운영비 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달라고 요청한 문서', '신림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에 대한 분양자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주민대표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통장사본' 및 '주민대표협의회에서 운영비등으로 지출한 총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1995. 1. 1부터 1996.12.31.까지의 협의회 회의록 및 협의회와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보량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할 수 있는 데 그치고 공개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신림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피청구인에게 협의회의 운영비등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보이므로 동 문서의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 신림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충당 등을 위하여 보류한 주택 20호에 대한 분양자 명단,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은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음

○ 협의회의 운영비 입출금통장 사본 및 협의회에서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총 1,057,863,117원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나 협의회의 운영비 등 입출금통장사본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하도록 함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5002
피청구인 : 대한주택공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신림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설원가계산원장' 관련자료인 ①제반공사비입증세부자료 ②평당 공사비 원가산정내역 ③공사비집행내역 영수증과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자료인 ④평당분양가세부산정내역 ⑤평당 대지비(택지비)산정내역 ⑥권리자·일반분양·보류시설·기타시설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⑦분양가 수입내역 총액, ⑧ 보류시설·주택공사 직원의 분양가 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위 정보들 중 ①과 ③의 정보는 건설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정보라고 보기 힘들고, 위 정보들 일체를 모두 사본하여 공개할 경우 그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위 ②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정보는 기 공개한 '건설원가 계산원장' 관련 자료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또한, 청구인은 '분양가 산출근거'와 관련 한 핵심정보인" ④평당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⑤평당 대지비(택지비) 산정내역 ⑥권리자·일반분양·보류시설·기타시설 분양가 세부산정내역 ⑦분양가 수입내역 총액 ⑧보류시설·주택공사직원의 분양가내역"도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정보들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정보들 역시 기 공개된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 자료에 의

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및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신림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설원가계산원장 및 분양가 산출근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들에 대하여 기 공개하였고, 따라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09728
피청구인 : 교통안전공단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9.14. 피청구인에게 3개회사(○○, ○○, ○○)가 1999.1.1.부터 2002.8.31.까지 형식승인 신청한 차량의 제원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9.28. 형식승인을 위한 신청서 및 명세제원표의 내용은 개인신상정보와 자동차회사의 미공개 기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점,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은 차량의 제작을 위한 기업 고유의 기술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해당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청구인은 비록 개인신상정보와 자동차회사의 미공개 기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역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 건 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보호하여야 할 기업의 이익이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0371
피청구인 : ○○세무서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1999. 6. 22.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2002. 11. 13. 이와 관련된 문서인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2002. 11. 21. 공개를 거부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행정감시를 하기 위한 것인 점,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주요정보는 독촉장의 발부일, 발부자 성명, 송달일자, 송달방법 및 체납액 등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와 같은 정보들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목적인 행정감시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인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는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분실되어 현실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3-04988
피청구인 : ○○세무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2002. 2. 8.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연맹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하여 위 연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1억5천6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천5백만원을 추징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를 2003. 3.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4. 17. 피청구인에게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및 '피제보자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전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연맹이 청구외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된 자료'와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는 위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3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03.4.25. 심판외 ○○○외 4인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 송달받자, 같은 해 6. 12. 피청구인에게 '① 고소장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진정서처리하는 법규 명칭과 그 법규본문들, ② 사건 2003형제○○○○○호 피의사실요지 및 수사결과, 검찰주사 작성 직접수사보고서, ③ 검찰이 피고로 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사건번호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피의사실 요지는 고소사건 직접수사보고서와 같다"하면서 동 요지도, 동 보고서도 기재 또는 첨부 안하는 이유 및 근거는?, 고의로 공란(동이유고지서에)을 만들고는 그 하단에 "이 부분은 범죄사실 및 불기소이유에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 안 함"의 법적 근거는?, 그 공란의 내용 또는 취지는?'이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접수하였음
- 피청구인은 2003. 6. 25.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①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청이 행한 처분에 적용된 근거법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관련된 질의로서,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②항에 대해서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및 대검예규 제296호의 비공개대상(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1호)'이라는 이유로 ③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특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①항은 법제처·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법전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이거나 법률해석에 관련된 단순한 질의이므로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음

○ ②항은 사건 2003형제 ○○○○○호 피의사실 요지 및 그 수사결과는 이미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통하여 공개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음. 즉 피청구인은 이미 '검찰주사 작성의 고소사건 직접수사보고서 Ⅳ. 범죄사실' 부분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첨부하여 위 사건의 피의사실 요지를 공개하였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의 사실과 이유 중 '수사한 결과' 이하 부분에서 그에 대한 수사결과도 공개하였음

○ 또한 '검찰주사 작성 직접수사보고서' 중 위 Ⅳ. 범죄사실 Ⅴ.참고사항은 이미 앞서본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통해서 공개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별도로 공개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수사기록의 일부분으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건이 일반적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③항은 피청구인이 따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정보공개법 제3조 소정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공기관이 개별적인 자료 등을 수집·정리 또는 재구성하여 공개해야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청구인은 2003. 6. 12.자 질의서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행정청의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행정청의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소관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 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청송교도소 기결 수용자로서 자신이 조직폭력사범이 아님에도 조직폭력사범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 4. 17.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을 상대로 청송교도소측에 보낸 '조직폭력사범 관련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같은해 4. 8. 거부처분을 받자 부당하게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대상문건은 행정청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 기밀'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 분명하며, 청구인은 본건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 이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조직폭력사범 분류를 해제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법무부는 2002.11.19.청구인이 조직폭력범죄에 가담한 정도 및 조직사범 분류 경위를 자세히 적시하면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미 자신이 조직사범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 그렇다면 대상 문건 공개시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자기정보에 대한 분리 공개가 청구인의 권익 실현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2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 교도관에 대한 폭행 등으로 징역 4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기록 일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법제7조제1항제4호를 이유로 '범죄인지보고, 범죄발생보고, 수사지휘건의, 징벌관련서류, 피고인 규율위반 통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비공개 문건중 '징벌관련서류, 규율위반통보'는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보고 및 향후 형의 집행 및 교정의 기초자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정기관의 내부문서로서 대부분 본건 형사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고, 따라서 본건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 판단의 실질적·직접적 증거자료로 쓰였다고 보기 힘들며, 규율위반행위 보고 관련 교도관의 서명 등 인적사항을 담고 있어서 공개될 경우 형의집행 및 교정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비공개 문건 중 '범죄인지보고, 범죄발생보고,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의 초동 단계에서 범죄의 인지·보고 및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로서, 그 중 본건 형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이미 피청구인이 공개한 '수사기록, 관계인 조서 및 공판조서' 등에 충분히 적시된 바, 위 비공개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특별히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행정의 효율성 등의 공익이 그 공개를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청구인은 위 비공개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측이 청구인에 대해서 구체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 작성의 '사건기록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임" 등의 불허이유가 적시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음

○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때 위 문건의 공개시 침해될 수 있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 부산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1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청구취지

- 이의 신청에 대한 '일부기각' 결정은 위법 부당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①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청장의 고발장, 검찰의 수사지휘사항, 경찰이 송치사항 및 관계자 진술, ② 부산지검이 파견법위반으로 조사한 사건현황)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02형제…호 파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4호 및 제6호에 의하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현재 수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위 사건 수사기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02 행심 1
피청구인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주지검에서 2002. 5. 29. 혐의없음 처분하자 2002. 10. 21. 우편으로 위 수사기록 중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같은 달 2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제7호에 의해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하자, 고소장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과 청구인외 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전주지검 2002형제 …호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청구외 ○○○명의의 고소장은 '청구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고소사실 즉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들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이미 공개되었던 점, 고소인의 무고혐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도 담당 검사에 의하여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2003-231
피청구인 : 종로구청장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이의절차의 이행확인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각하

○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이의절차확인요청도 거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03 - 172호
피청구인 : 중랑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중랑구 상봉동 ○○-○○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영업지(상봉동 ○○-○○)가 편입된 자로, 2003. 2. 17. 피청구인에게 ○○동 ○○내 ○○실업의 영업보상 관련 지장물조사조서, 복명서 및 감정평가상세내용에 대한 공개를 청구
- 피청구인은 2003. 3. 6. 지장물조사조서 및 도면, 감정평가상세내용을 모두 공개결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3. 16. 청구취지와 다르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24. 재공개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4. 3. 다른 서류로 갈음하지 말 것을 요구 행정심판을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문서라면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공개를 위하여 가공을 필요로 하거나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라면 이 역시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현지조사를 거친 복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복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지장물 보상대상이 아니라 영업보상 대상이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지장물조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신 영업자조서를 공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공개한 감정평가서 내역보도 더 상세한 감정평가서 내역을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사실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고의적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은닉하

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서행심 2003 - 90
피청구인 : 동작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2. 11. 2. 피청구인에게 구립 청소년독서실부지 옹벽 설치와 관련 공사당시 구청정책회의록 및 참고도면 등 5건의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11.28자로 일부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은 정보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2002.11.30. 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2.12. 6자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2000. 3. 23. 구립 청소년독서실 옹벽설치 관련건으로 재협의(구청정책회의) 회의록 및 참고도면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회의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재협의(구청정책회의) 회의록 및 참고도면 정보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옹벽설치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단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공개를 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정보가 당초에 정보비공개사유에 해당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내용중 ④번 항목인 재협의(구청정책회의)회의록 및 참고도면을 제외하고는 이 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1 경행심 290
피청구인 : 부천시 소사구청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01.10.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번지 관련 건축허가 관련공문과 허가된 설계변경도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01.11.1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설계변경도면에 대하여 제3자인 건축주가 명시적으로 비공개요청을 한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이 허가된 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각종 기관의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종결된 점,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적·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건축주가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가 보다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정·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관련공문도 추가 공개청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한 바 없을뿐더러, 이 사건 심판청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공개청구할 실익이 없고, 청구인의 취지를 허가서외 신청서 등 관계된 모든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임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3 경행심 12
피청구인 : 안양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안양시에 근무하는 환경직공무원으로 동기생들은 3년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만에 근속승진을 하게 된 것이 불공정한 인사라고 '02.10.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민원은 경기도지사를 경유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고, 피청구인은 공정하게 인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
- 이에 청구인은 '02.12.24 위 민원관련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2.27 정보공개법 및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결정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 2003. 2.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기각재결된 사실이 있고,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청구인의 동일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청구인이 진급을 동료공무원보다 늦게 한 사유를 확인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인사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행정심판판위원회 2002 경행심 393
피청구인 : 안양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안양시 동안구청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2002.10.12 피청구인에게 공무원구조조정 관련 서류일체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02.10.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이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인사와 관련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음. 이후 청구인은 2002.11.20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12.10 안양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위의 비공개사유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정보의 공개신청을 공무원구조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무원구조조정은 IMF경제체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도, 초과현원 등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문일체를 공개할 경우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당사자간 혼란을 초래하고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되어 이를 달리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3경행심114
피청구인 : 시흥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2.14. 피청구인에게 시흥시관내 22개소 양어장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조건, 설계도면사본 각1부를 정보공개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24.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과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기소되고 있는 상태(양어장 위법행위 발생으로 2003.2.10일자 고발조치중)로서 공정성에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있어 비공개결정 처분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양어장설치허가서, 설계도면세는 피허가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과 허가위치, 조건과 같은 허가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이 분명함

○ 제3자의 허가관련서류를 단지 행정감시와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제한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03 경행심 185
피청구인 : 의왕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 1. 13. 피청구인에게 ○○동 ○○지역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3. 1. 20일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사자인 조합측이 조합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하여 비공개를 결정함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은 의왕시 ○○동 대○○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내역이 조합원의 사생활 침해범위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인가신청서 및 인가내역에는 조합원 명부 등에 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인정되고, 더욱이 해당 조합측에서 제3자인 청구인의 조합인가서류 공개요청에 대해 조합원들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하여 비공개를 원하고 있는 바 제3자의 허가관련 서류를 단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 결정함

사건번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10247
피청구인 : 충청남도지사
청구취지
- '02. 8. 5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당진군 소관 시험성적 1등에서 10등까지 해당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등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문제지는 객관식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추후 실시할 다른 시험응시자와의 형평성 저해 우려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각 시험응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됨.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부분공개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청구당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청구인은 단순히 답안지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 공개방법을 사본의 교부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비록 개인정보를 가린 답안지라 하더라도 답안지 사본을 교부할 경우 개인의 신상이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03-79
피청구인 : 해남군수
청구취지

- 청구인은 '03.6.9행정감시 목적으로 '02.1월부터 '03.4월 기간 중 해남군 수의계약 체결공사와 관련한 계약체결 날짜,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보함
-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해 7.17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그 청구내용을 열람 방식으로 전부 공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그 청구인은 같은해 7.23 당초 공개방법 요구가 사본 출력물에 의한 공개청구이므로 그 청구권자의 정보공개 방법대로 공개해 줄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같은해 7월24일 위 청구인의 2차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바 없음으로 반려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사건번호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2003-238호
피청구인 : 영천시장
청구취지

-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그린환경센터조성사업 시공업체인 ○○건설(주)와 하도급 업체인 (주)○○토건과의 하도급계약서 내역 및 기성금 지불내역의 공개를 원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회계에규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등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2003.7.18 이사건 비공개결정

< 심판 내용 >

▶ 피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는 기술지식의 보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규정한 조항이며, 공개청구한 내용중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후 공개가능한 부분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

○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 제1항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행정정보비공개 결정통보는 취소하기로 재결함

사건번호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제2003-112호
피청구인 : 양산시장
청구취지

- 2002. 6.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61년 ○○시 ○○면의 귀농정착 개간사업용지 매수조서원안 등 8개 항목의 귀농정착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2002. 6. 17. 피청구인은 관련문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문서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통지하였고, 2003. 3. 24. 청구인이 또 다시 ○○면 귀농정착 사업용지 매수계약체결 보고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2003. 4. 4. 피청구인이 다시 같은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2. 6.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 2003. 4.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존대상인 정보가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정보공개대상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당시 ○○군 ○○면의 귀농청착 개간사업 관련 문서들을 영구보존문서로 관리하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면서 당시 ○○군 ○○면의 문서들은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현재 당시 ○○군 ○○면의 문서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는 피청구인이 당시 ○○군 ○○면의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를 공개할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6.17.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2003. 4.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정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03-20호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청구취지
- '03.5.16 피청구인에 대한 '02년도 경조사비외 7건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및 관련증빙서 사본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03.6.19 열람토록하는 공개결정통지를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들은 행정감사의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일반 교사들로서 당해 소속 학교의 행정감사를 실시할 법률적 권한이 인정되는지 의문시되며, 그 외 피청구인에게 업무상 비리혐의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함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에는 사본·복제물 교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이 아닌 원본 열람방식에 의한 정보공개결정을 공개거부나 일부비공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특히 본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알권리가 반드시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 청구인들이 주장한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도 '청구인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2개년도에 걸친 경조사비 외 7건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및 관련증빙서류 사본은 총 294매에 달하는바, 열람으로도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본 청구의 경우 사본 또는 복제물의 요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함

사건번호 : 행심2002-3호
피청구인 : ○○중학교장
청구취지

- ○○중학교는 '01학년도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의 집행을 '02. 3. 7로 완료하고, 결산서(안)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결과를 작성하였으며, 학교장이 학교운영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02.3.19.에 회의를 개최하여 '0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 및 학교발전기금 집행결과를 심의 의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재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회계 결산서 및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정보공개청구를 '02.4.30.자로 하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①항 5호·6호와 제8조②항에 의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02. 5. 30.자로 비공개처분을 하였음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예·결산의 적법 및 정당성 여부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심의·통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예·결산내용과 심의절차의 위법·부당사항은 찾아 볼 수 없음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과 동창회비 집행내역의 비공개에 대하여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학교의 이해관계자 또는 학부모의 심리적인 경쟁심의 유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의 지침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창회비는 동창회의 자발적 조직과 동창회장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서 학교회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1조에 의할 때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요컨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울 주는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복사물량의 단순한 수치적 매수로만 판단될 것은 아니라할 것이어서 이는 당해 기관의 행정인원수·업무의 중요성·대체적 인력·사본의 청구물량 등 제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한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됨

○ 2001학년도 학교회계 결산관련문건, 동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및 동창회비 관련문건에 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학교발전기금 기부자 명단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대상이며 동창회비 관련문건은 동법 제1조에 의거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사건번호 :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2003행심8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3. 10. 9. 피청구인에게 "1975년도 ○○고 제○○회 졸업생중 부 성명 ○○○, 모 성명 미상, 출생년도 58년생인 ○○○"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10. "○○○이라는 졸업생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10.29.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에 대한 자퇴, 전학, 휴학 후 졸업기록, 75년 졸업생 명단 중 ○○○의 생활기록부, 졸업앨범 열람 복사, 동생 ○○○(79년 제○○회 졸업)에 대한 기본인적사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키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

<심판 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의 생활기록부는 이름·주민등록번호·학업성적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놓은 문서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그 외의 정보 또한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적사항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역에 속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키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부 록》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인천광역시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 5 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 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 9 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 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

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4.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 3 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 4 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

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 6 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 7 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 8 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

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 3 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4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 8 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

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 9 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제7조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 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 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여권·외국인등록)번 호	
			사 업 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이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여권·외국인등록)번 호	
			사 업 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담 당 공 무 원 등)	직 급		이 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 관 인 경 우	기관명		직 급		서 명 또는 인	
				이 름			
	일반인인 경 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이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 공 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table>
<tr><td>접 수 일 자</td><td colspan="3"></td><td>접 수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청 구 인</td><td>이 름</td><td colspan="2"></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정 보 내 용</td><td colspan="6"></td></tr>
<tr><td>의견청취일시</td><td colspan="6"></td></tr>
<tr><td>의견청취내용</td><td colspan="6"></td></tr>
<tr><td>기타참고사항</td><td colspan="6"></td></tr>
<tr><td>의 견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td><td>직 급</td><td colspan="2"></td><td>이름</td><td colspan="2"></td><td>서 명
또는 인</td></tr>
<tr><td rowspan="4">구 술 자
(제 3 자)</td><td rowspan="2">기 관 인
경 우</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직급</td><td></td><td rowspan="2">서 명
또는 인</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2"></td><td>이름</td><td></td></tr>
<tr><td rowspan="3">일반인인
경 우</td><td>이 름</td><td colspan="3"></td><td rowspan="3">서 명
또는 인</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table>
<tr><td>접 수 일 자</td><td colspan="2"></td><td>접 수 번 호</td><td></td></tr>
<tr><td>청 구 정 보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공 개 내 용</td><td colspan="4"></td></tr>
<tr><td>비 공 개(전부또는 일부)내용및사유</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공 개 방 법</td><td>공개형태</td><td colspan="3">□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td></tr>
<tr><td>교부방법</td><td colspan="3">□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td></tr>
<tr><td>공 개 일 시(기간)</td><td colspan="2"></td><td>공 개 장 소</td><td></td></tr>
<tr><td>수 수 료(A)</td><td colspan="2">우 송 료 (B)</td><td>수수료감면액 (C)</td><td>계 (A+B-C)</td></tr>
<tr><td>원</td><td colspan="2">원</td><td>원</td><td>원</td></tr>
<tr><td>수수료산정내역</td><td colspan="2"></td><td>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td><td></td></tr>
<tr><td colspan="5">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 구 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접 수 일 자</td><td></td><td>접 수 번 호</td><td></td></tr>
<tr><td rowspan="3">이 의
신 청 인</td><td>이 름
(법인명 등
및 대표자)</td><td></td><td>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td><td></td></tr>
<tr><td rowspan="2">주 소
(소재지)</td><td rowspan="2"></td><td>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td><td></td></tr>
<tr><td>전 자 우 편 주 소</td><td></td></tr>
<tr><td colspan="2">공 개 또 는
비 공 개 내 용</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통 지 서 수 령 유 무</td><td colspan="3">□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td></tr>
<tr><td colspan="2">이 의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의신청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 장 사 유			
연장결정기한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 건 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서과	민원실	자료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공개형태						교부방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형태	담당부서	결정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 (법제9조 제1항제1호)	국 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 민 의 생 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 보 등 (제4호)	공 정 한 업무수행 지 장 등 (제5호)	개 인 사 생 활 침 해 (제6호)	법 인 등 영 업 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 익 · 불 이 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건수	처리결과			청구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건수	계류중	판결결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의결(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2002. 9. 30 조례 제3630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시(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및 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 3 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산화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독립된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시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공개받은 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시 및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3. 시의 시장, 부시장, 실·국·원·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

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시립인천대학교의 총장·학장·처장, 시립인천전문대학의 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출연·출자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
7.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8.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9.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4.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내역
8. 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
9.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내역
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13.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제 7 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

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 8 조(비용의 부담) ①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정보공개심의회설치) 법 제10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사항 및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개대상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정보공개청구자·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정 2002. 12. 30 규칙 제240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 기관별 당해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 3 조(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서면·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 매체 등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당해 기관의 민원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 부서에서 접수·안내를 담당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안내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당해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
4. 조례 제6조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 4 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비치한다.

제 2 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 5 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조례 제6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 6 조(공표형태)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표대상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제 7 조(공표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부서・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시보 : 인천광역시 공보관실
2. 인터넷 : 공개대상기관별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공표운영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시 본청과 3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장인 시의 소속기관과 출연·출자기관별로 구성·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공개대상기관은 시본청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시본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5인과 위촉직 위원 2인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환경보전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시본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에 설치되는 심의회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지명하고 기관특성에 맞는 방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서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문서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2000. 7. 18 규칙 제230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2000. 7. 18 규칙 제2308호)에 의하여 구성된 위촉직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④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심의안건은 이 규칙에 의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거, 위원중 1/2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정 1979. 5. 17 조례 제1195호
개정 1979. 9. 20 조례 제1214호
개정 1980. 7. 21 조례 제1302호
개정 1980. 10. 2 조례 제1312호
개정 1980. 11. 13 조례 제1315호
개정 1981. 7. 1 조례 제1394호
개정 1982. 1. 22 조례 제1458호
개정 1982. 4. 30 조례 제1543호
개정 1982. 7. 23 조례 제1568호
개정 1982. 12. 27 조례 제1600호
개정 1982. 12. 27 조례 제1602호
개정 1983. 12. 3 조례 제1732호
개정 1983. 12. 26 조례 제1735호
개정 1984. 10. 16 조례 제1811호
개정 1985. 3. 28 조례 제1865호
개정 1985. 5. 25 조례 제1870호
개정 1986. 3. 19 조례 제1949호
개정 1988. 4. 30 조례 제2118호
전문개정 1988. 4. 30 조례 제2131호
개정 1989. 2. 25 조례 제2257호
개정 1989. 3. 21 조례 제2265호
개정 1989. 5. 2 조례 제2280호
개정 1989. 6. 21 조례 제2306호
개정 1991. 2. 12 조례 제2477호
(인천직할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 1994. 2. 28 조례 제2806호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 1995. 1. 1 조례 제2886호
(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개정 1995. 4. 12 조례 제2918호
개정 1995. 6. 5 조례 제2965호
개정 1996. 3. 4 조례 제3037호
개정 1998. 3. 16 조례 제3231호
개정 2000. 10. 30 조례 제3483호
개정 2001. 1. 8 조례 제3494호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 2002. 1. 7 조례 제3562호
개정 2002. 5. 27 조례 제3614호
개정 2003. 12. 29 조례 제371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3. 16>

제 2 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립인천대학교 및 시립인천전문대학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징수방법은 각각 대학총장 및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3. 16>

제 3 조(요율)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기타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998. 3. 16>

제 4 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1. 2. 12>

제 5 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8. 3. 16>

제 6 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6>

② <삭제 1991. 2. 12>

③시장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개정 2000. 10. 30>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9>

제 7 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1. 8>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1998. 3. 16>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 3. 16>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 3. 16>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 3.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37호. 1975. 12. 29) 인천시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557호 1977. 4. 4) 인천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1974. 6. 20) 인천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358호. 1963. 3. 18)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 20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2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0. 2 조례 제1312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1979. 9. 21. 규칙 65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11. 13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 1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 22 조례 제1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인천직할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1244호)
2. 인천직할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384호)
3. 인천직할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369호)

부 칙 <1982. 4. 30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 23 조례 제1568호>

(시행일) 이 조례는 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27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27 조례 제16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 4. 22조례 제1253호) 및 인천직할시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1982. 1. 22 규칙 제78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12. 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6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0. 16 조례 제18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 28 조례 제186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5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 19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30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30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5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1 조례 제2265호>

①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5. 2 조례 제228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6. 21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12 조례 제2477호>

제1조 생략

제2조(관련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중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1”, 제4조, 제6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1994. 2. 28 조례 제2806호>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만,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의 제증명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징수방법은 각각 대학총장 및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5. 1. 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 칙 <1995. 4. 12 조례 제2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5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4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6 조례 제3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30 조례 제3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조례 제3494호>

제1조 생략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2. 1. 7 조례 제3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조례 제3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 통	◦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공 통
감사관실	◦ 재산등록사항	◦ 관련문서(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감 사 관
	◦ 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 관련문서	
자 치 행정국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총 무 과
	◦ 징계	◦ 징계 관련문서	
	◦ 지방세 부과	◦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세 정 과
도 시 계획국	◦ 도시관리계획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도시계획과
여 성 복 지 보건국	◦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1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관련기록(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조)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자, 감염자에 관한사항(전염병예방법제54조의6)	여성정책과 가정청소년과 여성복지관 보건정책과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기 획 관리실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정 보 화 담 당 관
자 치 행정국	◦ 시설관리	◦ 관련도면	총 무 과
	◦ 을지연습	◦ 전시 자동차 동원 관련 문서 등 일체	자치행정과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자 치 행정국 등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총 무 과
		◦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 신공항개발 타당성조사 관련문서 등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마약·독극물·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주택건축과 항 만 공 항 지 원 과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기 획 관리실	◦ 범죄의 예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 수사의뢰 협조 중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 통	◦ 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공 통
	◦ 공무원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규제관련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 통	◦ 규제관련	◦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 통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지방지적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 사 관 법무담당관 총 무 과 도시계획과 지 적 과
	◦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회 계 과 각 사업소
	◦ 공사관련 감사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일상감사 문서	회 계 과 각 사업소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자치행정국	◦ 인사관련	◦ 승진 –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심사관련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총무과
	◦ 시 험	◦ 시험 – 승진사전전형 기출시험문제 – 사전전형 채점관련사항(필기, 면접)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용시험, 자격시험의 채점 ◦ 임용시험,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 비밀관리	◦ 비밀관리 관련문서	
교통국	◦ 조정관련문서	◦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조정) 회의록 등 조정 관련 문서 등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국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감정평가서)	개발계획과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 통	◦ 개인정보	◦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총 무 과 세 정 과 지 적 과
자 치 행정국	◦ 인사기록	◦ 인사기록카드	총 무 과
	◦ 징계, 상훈	◦ 징계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 상훈 – 공적조서	
	◦ 상조회 업무	◦ 상조회 – 상조회 대부금 상환내역 – 대부신청서	
	◦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 교육현황관리	◦ 교육훈련 이수내역 등	
	◦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인가 관련문서	
	◦ 주민조회	◦ 전 부	자치행정과
	◦ 민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교통국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과태료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교통관리과
	◦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내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 통	◦정당한 이익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공 통
교통국	◦영업상비밀	◦운수권배분 관련 문서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 소관	업 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부서
실·과 공 통	◦특정인 이익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신도시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과 역세권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도시계획과 개발계획과 항만공항 지원과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